

노인복지 예산중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합쳐서 7억 7,800만원이 보조되었으나 설계비 1억 3,300만원을 제외한 6억 4,400만원을 금년도 내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여 '98년도 예산에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 부담금 41억 3,700만원 중에서 서울시 보조금 8억 2,700만원이 이번에 교부되어서 7억 6,100만원을 감액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 저희 시민생활국 추경예산 재원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수정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沈勇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專門委員 俞載漢 專門委員 俞載漢입니다.

'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歳入・歳出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먼저 예산의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영등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차 추경 후의 간주처리된 14억 4,163만 7,000원(일반회계 13억 293만원, 특별회계 1억 3,870만 7,000원)과 금회 추경예산 38억 5,682만 5,000원을 합하면 총 52억 9,846만 2,000원이나 본예산에서 경정요인이 발생한 8억 2,112만 9,000원과 간주처리된 14억 4,163만 7,000원을 제하면 순수 추경된 예산액은 30억 3,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영등포구 총예산(1차 추경 포함) 1,461억 7,514만 6,000원 대비 2.08%가 증액된 편성 예산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의 세입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체 징수세입 예산은 없으며 조정교부금(보통교부금) 6억 9,500만원과 보조금(국·시비 보조금) 23억 4,069만 6,000원으로 총 30억 3,569만 6,000원이며, 1차 추경예산 이후의

간주처리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4,000만원과 조정교부금(보통교부금) 1,000만원 그리고 보조금(국·시비 보조금) 12억 5,293만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 3,870만 7,000원으로 총 14억 4,163만 7,000원으로 2차 추경의 총 세입은 52억 9,8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차 추경 후의 간주처리 현황

(단위 : 천원)

회수 및 월 일	내 용	금 액
총 계		1,302,930
제7회('97. 7.25)	시유재산관리 시비보조	15,994
제8회('97. 7.25)	병역의무자 여비 추가지원	23,000
제9회('97. 8.28)	대립3지구 교통개선 시비보조 문맹정 기기설치 시비보조	352,084 3,000
제10회('97. 9.11)	자원봉사센터설치 국비보조(지방교부세) 깨끗한 거리 조성 시비보조	40,000 30,000
제11회('97.10.22)	매립지 조성비 부담 시비보조 학교폭력 근절지원 특별교부금 학교폭력 근절지원 시비보조	827,532 10,000 1,320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31억 3,982만 5,000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7억 1,700만원으로 38억 5,682만 5,000원입니다. 이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억 2,112만 9,000원(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 부담금 7억 6,112만 9,000원과 강변육갑문 구조물 보수공사비 6,000만원)의 경정예산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예산액 38억 5,682만 5,000원에서 경정예산 8억 2,112만 9,000원을 제하면 순수세출 예산은 30억 3,569만 6,000원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차 추경 후의 간주처리된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9,753만 2,000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8억 2,753만 2,000원 그리고 사회보장의 300만원, 교통관리 3억 5,028만 4,000원과 민방위관리 2,300만원으로 총 13억 293만원이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시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세출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13억 6,569만 6,000원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비 9억 7,500만원, 그리고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 2차 보전금 7억 9,912만 9,000원으로 총 31억 3,9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정된 예산은 청소관리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 부담금 7억 6,112만 9,000원이 경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정된 예산액은 간주처리된 청소관리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비 시비지원 8억 2,753만 2,000원을 받아 간주처리하므로 경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의 사회복지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연부금은 구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모든 사업비는 시기적으로 금년 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우므로 금회 추경예산에서 '98년으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97년도 명시이월비 조서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97.집행액 (집행예정액)	이월액	사유
	세세항	목	세항				
일반회계				3,119,261	133,845	2,985,416	
사회복지				2,340,696	-	2,340,696	
문제종합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210)	시설비등(401)	시설비(401-04)	1,365,696	-	1,365,696	국비추가보조금 기본실시계획의 절대동기 및 건립비 추가확보를 위하여 이월예산 편성('98학공)
신종합사회복지관련	시·도비보조사업(230)	시설비등(401)	시설비(401-04)	975,000	-	975,000	
노인복지				778,565	133,845	644,720	
노인종합복지관련	국고보조(210)	시설비등(401)	시설비(401-04)	778,565	133,845	644,720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7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勇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喆 委員 세입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委員長 沈勇鎭 예, 세입부분에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예산 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1페이지 안 계시면 42, 43페이지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李重植 委員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重植 委員 李重植 委員입니다.

예산 문제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전체의 투자액에서 우리구 자체예산과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대개 몇 대 몇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趙大顯 社會福祉課長 趙大顯입니다.

李重植 委員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고와 시비 자치구비의 투자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 방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은 서울시 방침이 구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구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액 자치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립한 후에 운영비만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7월에 서울시민복지5개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구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구도 시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 구가 일부 전액 구비로 계획되었다가 일부 시비를 보조 받게 되었습니다. 또 국고는 500평 규모의 수준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지금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서울특별시는 그 규정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重植 委員 국고에서 500평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趙大顯 타 시·도만 하지 서울시는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李重植 委員 서울시는 안된다?

○社會福祉課長 趙大顯 예.

○李重植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좀 우리 복지관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갈게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예